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2-1호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따른 삼각보조점 (3점), 지적도근점(20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월 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중횡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보조 삼각점	보217	중부	273919.89	175968.75	374226.363	176041.182	5.72	35°57'55.0"	126°44'03.8"	미장동 476	11.10.25	토지정보과
"	보218	"	273662.04	175283.62	373968.498	175356.062	6.76	35°57'46.6"	126°43'36.4"	미장동 476	"	"
"	보219	"	273233.96	176067.27	373540.440	176139.713	7.82	35°57'32.8"	126°44'07.8"	미장동 476	"	"
지적 도근점	51797	"	274282.73	175108.10	374589.179	175180.535	5.78	35°58'06.7"	126°43'29.4"	미장동 456-12	"	"
"	51798	"	274272.23	175262.38	374578.685	175334.809	5.56	35°58'06.4"	126°43'35.5"	미장동 56-28	"	"
"	51799	"	274128.53	175278.51	374434.988	175350.944	5.74	35°58'01.7"	126°43'36.2"	미장동 57-57	"	"
"	51800	"	274138.63	175495.51	374445.093	175567.944	5.54	35°58'02.1"	126°43'44.8"	미장동 481	"	"
"	51801	"	274187.84	175552.55	374494.300	175624.984	5.69	35°58'03.7"	126°43'47.1"	미장동 481	"	"
"	51802	"	274280.35	175480.71	374586.807	175553.141	5.62	35°58'06.7"	126°43'44.2"	미장동 476	"	"
"	51803	"	274365.16	175565.42	374671.620	175637.850	5.55	35°58'09.4"	126°43'47.6"	미장동 476	"	"
"	51804	"	274197.20	175716.69	374503.665	175789.122	5.55	35°58'04.0"	126°43'53.7"	미장동 476	"	"
"	51805	"	274048.54	175850.44	374355.002	175922.875	5.51	35°57'59.2"	126°43'59.0"	미장동 476	"	"
"	51806	"	273819.63	175866.30	374126.096	175938.743	5.52	35°57'51.7"	126°43'59.7"	미장동 476	"	"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 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중형선수치				표고 (m)	위 도				경 도
명 칭	번 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 도근점	51807	중부	273781.40	175614.08	374087.863	175686.521	6.24	35°57'50.5"	126°43'49.6"	미장동 476	11.10.25	토지정보과
"	51808	"	273803.61	175424.02	374110.071	175496.457	6.34	35°57'51.2"	126°43'42.0"	미장동 476	"	"
"	51809	"	273878.92	175281.38	374185.377	175353.819	6.36	35°57'53.6"	126°43'36.3"	미장동 476	"	"
"	51810	"	273991.42	175279.54	374297.873	175351.977	6.30	35°57'57.3"	126°43'36.2"	미장동 476	"	"
"	51811	"	273781.74	175787.47	374088.206	175859.911	5.61	35°57'50.5"	126°43'56.5"	미장동 476	"	"
"	51812	"	273708.07	176156.44	374014.542	176228.875	5.90	35°57'48.2"	126°44'11.3"	미장동 476	"	"
"	51813	"	273582.12	176294.47	373888.599	176366.909	5.77	35°57'44.1"	126°44'16.8"	미장동 476	"	"
"	51814	"	273308.66	175591.83	373615.131	176024.273	5.18	35°57'35.2"	126°44'03.1"	미장동 476	"	"
"	51815	"	273281.69	175554.56	373588.159	175627.011	4.69	35°57'34.3"	126°43'47.3"	미장동 476	"	"
"	51816	"	273274.30	175230.64	373580.757	175303.086	4.92	35°57'34.0"	126°43'34.4"	미장동 476	"	"

군산시 고시 제2012-2호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월 일

1.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4	어청도항	3종어항	옥도면 어청도리 387번지 일원	770,144	전북고141 (2010.6.11)	
변경	4	어청도항	3종어항	옥도면 어청도리 387번지 일원	770,123		감)21m ²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2-4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폐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토지소재	설 치 년월일	비고
명 칭	번 호	X(m)	Y(m)			
지적삼각 보조점	보46	280796.92	184883.00	나포면 옥곶리 433-9	19950526	폐기
"	보47	281081.17	183543.38	나포면 주곡리 816-7	20040303	"
지적도근점	799	274489.01	172694.89	나운동 744-6	19881202	"
"	4668	268117.85	168695.77	옥구읍 어은리 1789-1	18991230	"
"	50001	276180.70	187880.65	서수면 서수리 1247-3	20060323	"
"	50003	276220.50	188293.52	서수면 서수리 1422-8	20060.23	"
"	50004	276197.90	187702.46	임피면 읍내리 1-15	20061121	"
"	50006	276164.36	187306.27	임피면 읍내리 7-7	20061121	"
"	50008	276231.05	187013.21	임피면 읍내리 88-2	20061121	"
"	50011	276549.63	186873.38	임피면 축산리 533-2	19990506	"
"	50026	276055.75	186353.20	임피면 읍내리 733	20051031	"
"	50027	275973.51	186362.95	임피면 읍내리 733	19990506	"
"	50028	276002.26	186428.07	임피면 읍내리 265-2	19990506	"
"	50029	276014.00	185501.01	임피면 읍내리 274-3	20061121	"
"	50057	271699.61	182717.70	대야면 지경리 792	19990506	"
"	50058	271726.52	182803.34	대야면 지경리 777-38	19990506	"
"	50061	271862.25	182725.30	대야면 지경리 730-4	20010927	"

군산시 고시 제2012-5호

「군산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 변경 고시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군산시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여 주거공간의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01. 16.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

제정 2011. 12.

1 건물배치계획

- 건물내 또는 옥외공간에 휴게공간, 휴게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할 것
- 실질적으로 동일건물 내 복합건축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복합건축을 지양하고 단일용도로 계획할 것 (권장)
- 대지내 자전거 주차장 또는 보관시설 설치 - **가구당 0.3대 이상**(권장)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를 아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장소에 비치할 것
 - ▶ **화단형** : 하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설치하고 상부에 자연화단 조성
 - ▶ **상자형** :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는 구조물로 조성

2 건물평면계획

- 복도·코아·홀은 가능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계단 등은 유사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 ▶ 계단참 및 계단유효 폭은 **1.2m 이상**인 피난계단으로 할 것
 - ▶ 복도의 유효폭은 **1.2m ~1.8m 이상**으로 할 것
 - ▶ 주거부분 건축물의 층고는 **2.8m 이상**으로 계획
- 단위세대 평면도상 침대, 옷장, 신발장 등의 가구와 세탁실, 주방, 화장실에 대한 시설 배치를 명확하게 표기
- 단위세대 계획에 있어 **최소 1면이상 발코니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것
- 화장실, 주방, 세탁실에 급배가급배수 배관(ADPD)을 위한 공간 확보할 것
- 옥내 주차공간은 건축물의 구조와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

3 건물입면(디자인)계획

○ 단지 원활한 일조·통풍·주거환경·개방감 확보 위해 1개동 입면길이 50미터이내이고 1개층 10호 조합이내로 계획.

단,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에는 적용 제외

○ 박스형의 획일적인 건축물에서 벗어나 입체적 구성 등 다양한 입면 형태로 계획할 것

○ 외장재는 내구성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능한 석재, 벽돌, 목재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

▶ 화재에 취약하고 도시미관상 불리한 드라이비트나 복합 판넬은 지양할 것

(단, 건물 일부에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상층부는 가능한 2단 이상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할 것

○ 건물 외관 색채는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건축 재료가 지닌 색감 및 소재감을 최대한 살려 주변과 조화되게 계획할 것

○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기둥 처리)로 계획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은 그 용도(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통과 및 휴게 기능 등)에 맞는 형태 및 외부 디자인으로 계획할 것

○ 도로사선 및 일조권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테라스 부분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처리 또는 옥상정원으로 계획할 것

4 지붕/옥탑 및 조경(녹화)계획

○ 세장한 형태의 획일적 디자인 옥탑은 지양하고, 단지의 특성 및 군산시 특성(이미지)을 살려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형적 디자인 창출(박공, 모임 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디자인)

- 돌출 Box형 기계실 억제를 위하여 옥탑 엘리베이터실은 가급적 No Tower로 설치(옥상층에 기계실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설치)
- 평지붕 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경우 옥상 녹화를 충분히 확보할 것(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의 전이층 활용)
- 조경은 영구 음지에 설치하는 등의 형식적인 조경이 아닌 양지에 식재하고 한 곳에 집중하여 설치토록 계획할 것

5 주차장 설치 계획

- 주차장 설치대수 산정에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기준·주택법 기준·군산시 주차장 조례 기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주차장 확보기준을 따로 정함.
- 주차장 확보기준 /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기준 마련

구 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 기준	주택법 주차대수 기준	군산시 주차대수 기준
원룸형	전용면적 12-50㎡	전용면적 합계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	세대당 0.7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기준과 세대당 0.6대 이상 중 많은 대수 적용
단지형	전용면적 85㎡이하	일반 공동주택과 기준 동일	세대당 1대 이상 (전용 60㎡이하 - 0.7대 이상)	좌 동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불가.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6 기타사항

- 에어컨 실외기(환풍기) 등은 설계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 집약화하여 배치 또는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그릴 등 차폐시설을 계획할 것

- 계량기, 도시가스, 급배수관 등 각종 설비시설은 가급적 건물 내부나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 100세대 이상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승인이 가능함.
- 심의도면 작성시 주변 건물 현황도(건물배치, 층수, 용도, 외장재료 등)와 현황 사진을 제출하고, 인접지 건물의 창문 등 개구부 위치를 도면에 표기 및 인접 주민에 대한 “사생활보호 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부 칙

- ①(시행일) 본 건축기준은 고시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한다.
-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③(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계획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건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군산시 고시 제2012-6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대표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대표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 16. ~ 1. 30.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군산시 창성3길 6-1외 5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군산시 공항로 508외 71건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군산시 창성3길 12-1외 22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대표지번 변경 : 군산시 공항로 506외 209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2-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1. 13.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나운동 하이스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회사명/대표 : (유)하이스종합개발 / 대표 : 김준영
 - 나. 주소 : 군산시 미룡동 440-1 파스텔로빌딩 203호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나운동 788-1,2번지
 - 나. 대지면적 : 1,299.20m²
 - 다. 건축면적 : 615.65m²
 - 라. 연 면 적 : 3,581.18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1동 7층, 36세대

- 78.9232형(전용면적 : 58.1036m ²)	6세대
- 79.6194형(전용면적 : 58.7812m ²)	6세대
- 80.6566형(전용면적 : 59.7384m ²)	24세대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업비 : 3,584,000천원
 - 아. 사업기간 : 2012. 01 ~ 2013. 01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228)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2-8호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일부취소 (군산 내초동 공영차고지 관련)

군산시 고시 제 2010-68호(2010.6.15), 군산시 고시 제2010-71호(2010.7.15)호로 고시한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중 “내초동 공영차고지 신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판결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련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월 일

■ 취소 처분일 : 2011. 12. 6

■ 취 소 사 유 :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2538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등취소 판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취소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취소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결정고시	변경(취소)			
군산시 전체		456,524,971	-		456,524,971	100.0
도시지역		207,448,822	-		207,448,822	45.4
공업지역	소계	28,203,398	감	102,947	28,100,451	6.2
	준공업지역	3,917,210	감	102,947	3,814,263	0.9
녹지지역	소계	82,088,662	증	102,947	82,191,609	18.0
	생산녹지지역	38,445,985	증	102,947	38,548,932	8.4
비도시지역		249,076,149	-		249,076,149	54.6

○ 취소 사유서

구분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취 소(환원) 사 유
	결정고시	취소(환원)			
군산시 내초동 187-6 일원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102,947	100%이하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 2538 도시관리계획결정고 시등취소」 판결에 의하여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2.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취소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 고시	취 소 (환원)	취소 (환원) 후		
신설	3	군산 공영차고지	공영 차고지	내초동 187-6일원	56,912	감)56,912	-	군산고시 제2010-68 (2010.6.15)	

○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취 소 (환 원) 내 용	취 소(환원) 사 유
3	자동차정류장	내초동 187-6번지 일원 자동차정류장 56,912㎡ 결정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 2538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등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

군산시 공고 제2011-236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 6단계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월 6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2) 명 칭 : 군산C.C 조성공사(6단계:숙박시설)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사업규모	대중제 27홀	대중제 9홀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대중제 9홀	숙박시설	부대시설
사업면적	1,571,961 m ²	410,875m ²	670,293m ²	606,563m ²	292,057m ²	19,888m ²	668,452m ²
사업기간	'04.06.22. ~ '06.02.28.	'04.06.22. ~ '06.08.31.	'04.06.22. ~ '07.01.31.	'06.05.31. ~ '08.01.31.	'06.05.31. ~ '09.12.31.	'09.10.31 ~ '11.12.31	'09.10.31 ~ '12.9.30
비 고	기 준공	기 준공	기 준공	기 준공	기 준공	금회준공	-

4.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레저산업(주) 대표 강신석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10. 31 ~ 2011. 12. 3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2-1호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공고

1. 2011. 10. 28 전라북도고시 제2011-329호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에 근거하여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된 내용으로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안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개발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 61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군산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겠으나, 미 수령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 1. .

군 산 시 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조촌동 일원
- 시 행 자 : 군산시장
- 시 행 면 적 : 864,295㎡

2. 공람기간

- 2012. 1. 4 ~ 1. 18 (14일간-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
- 공람시간 : 09 : 00 ~ 18 : 00 (토요일 및 일요일은 14시까지)
*의견서 우편 접수 시 공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3.공람내용

- 환지계획 수립기준
- 토지 소유자 및 토지에 관한 권리 내용
- 실시계획인가 도면
- 환지계획 관련 도서

4.공람장소

-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 사무실
- 주소 : 군산시 미장동 53-14번지(삼성 웨르빌아파트 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0-444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23호

보 상 협 의 공 고(안)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공고를 합니다.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무녀도리·선유도리·장자도리 일원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협의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183-1 KT김제지사 2층
한국감정원 김제보상사무소(☎063-545-9205~9)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아래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國)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내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토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78-9 (178-5)	임야	343*1/3	김수자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03	
2	토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41-1 (441)	전	37	박경숙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41	
3	토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56-62 (산56-10)	임야	1,328*4/104	김용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천호동 243-172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협의증서2부, 등기촉탁승낙서1부, 보상금청구서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1부, 토지(임야)대장(분할 전·후 지번)각1부,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손실보상협의용)각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2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인감도장

2012. 01. .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2-38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구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 .

군 산 시 장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구 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서명 주민수	비 고
군 산 시	215,168명	19,561명	

※ 기 타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공표에 대한 문의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군산시장(총무과 ☎450-4238, FAX 450-43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주민수

[2011. 12. 31일 기준]

읍면동	19세이상 내국인 (A)	재외 국민수 (B)	외국인 영주체류 자 (C)	선거권이 없는자(D)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A+B+C-D)	연서 주민수	비고
계	215,704	180	171	887	215,168	19,561	
옥구읍	3,388	3	2	19	3,374		
옥산면	2,547	1	1	15	2,534		
회현면	3,200	1	2	7	3,196		

임피면	2,929	2	1	10	2,922		
서수면	2,808	2		7	2,803		
대야면	5,552	2	2	23	5,533		
개정면	3,356	1	1	12	3,346		
성산면	2,968	1		10	2,959		
나포면	2,410	1	1	12	2,400		
옥도면	3,769	4	2	21	3,754		
옥서면	4,172	10	1	16	4,167		
해신동	2,894	2	3	13	2,886		
월명동	7,259	10	37	39	7,267		
삼학동	6,603	10	11	31	6,593		
신평동	7,215	4	6	30	7,195		
중앙동	3,801	3	18	30	3,792		
홍남동	9,288	11	4	40	9,263		
조촌동	10,838	9	5	44	10,808		
경암동	7,130	6	2	46	7,092		
구암동	5,592	3	6	11	5,590		
개정동	2,944		2	14	2,932		
수송동	29,174	20	17	80	29,131		
나운1동	13,416	29	20	52	13,413		
나운2동	20,450	4	2	69	20,387		
나운3동	27,110	13	9	80	27,052		
소룡동	14,730	16	9	92	14,663		
미성동	10,161	12	7	64	10,116		

군산시 공고 제2012-3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 .

군 산 시 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기관명	내국인			영주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경과 외국인수(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A+B)	비고
	19세이상 인구수	선거권이 없는자	선거권 보유자(A)			
군산시	215,704	887	214,817	88	214,905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군산시장】

(단위 : 명)

읍면동	19세 이상	19세 이상 외국인수 (영주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상 경과자)	주민소환 투표청구 권자 총수	청구 서명인수	1/3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할 최소 서명인구수
계	214,817	88	214,905	32,236	
옥구읍	3,369		3,369		506
옥산면	2,532		2,532		380
회현면	3,193		3,193		479
임피면	2,919		2,919		438
서수면	2,801		2,801		421
대야면	5,529		5,529		830
개정면	3,344		3,344		502
성산면	2,958		2,958		444
나포면	2,398		2,398		360
옥도면	3,748		3,748		563
옥서면	4,156		4,156		624
해신동	2,881	3	2,884		433
월명동	7,220	33	7,253		1,088
삼학동	6,572	8	6,580		987
신평동	7,185	3	7,188		1,079
중앙동	3,771	16	3,787		569
홍남동	9,248	4	9,252		1,388
조촌동	10,794	1	10,795		1,620
경암동	7,084		7,084		1,063
구암동	5,581	4	5,585		838
개정동	2,930	1	2,931		440
수송동	29,094	2	29,096		2,150
나운1동	13,364	5	13,369		2,006
나운2동	20,381	2	20,383		2,150
나운3동	27,030	4	27,034		2,150
소룡동	14,638	1	14,639		2,150
미성동	10,097	1	10,098		1,515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군산시의회의원】

(단위 : 명)

읍 면 동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외국인수 (영주체류자격 취득후 3년 이상 경과자)	청구권자 총 수	청 구 서명인수	1/3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할최소 서명인구수
가 선거구	계	16,998	0	16,998	3,400	
	옥구읍	3,369		3,369		170
	옥산면	2,532		2,532		170
	회현면	3,193		3,193		170
	옥도면	3,748		3,748		170
	옥서면	4,156		4,156		170
나 선거구	계	27,616	5	27,621	5,525	
	해신동	2,881	3	2,884		277
	소룡동	14,638	1	14,639		277
	미성동	10,097	1	10,098		277
다 선거구	계	19,949	0	19,949	3,990	
	임피면	2,919		2,919		200
	서수면	2,801		2,801		200
	대야면	5,529		5,529		200
	개정면	3,344		3,344		200
	성산면	2,958		2,958		200
라 선거구	계	26,389	6	26,395	5,279	
	조촌동	10,794	1	10,795		267
	경암동	7,084		7,084		267
	구암동	5,581	4	5,585		267
	개정동	2,930	1	2,931		267
마 선거구	계	24,748	60	24,808	4,962	
	월명동	7,220	33	7,253		249
	삼학동	6,572	8	6,580		249
	신평동	7,185	3	7,188		249
	중앙동	3,771	16	3,787		249
바 선거구	계	38,342	6	38,348	7,670	
	홍남동	9,248	4	9,252		384
	수송동	29,094	2	29,096		384
사 선거구	계	33,745	7	33,752	6,751	
	나운1동	13,364	5	13,369		338
	나운2동	20,381	2	20,383		338
아 선거구	계	27,030	4	27,034	5,407	
	나운3동	27,030	4	27,034		5,407

군산시 공고 제2012-40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우리시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 .

군 산 시 장

□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구 분	19세이상 주민 총수	연서 주민수	비 고
군 산 시	215,085명	4,302명	

※ 기 타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에 대한 문의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군산시장(총무과 ☎450-4238, FAX 450-43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2011. 12. 31일 기준]

구 분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자 (B)	주민 총수 (A-B)	연 서 주민수	비 고
	계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계	215,972	215,704	180	88	887	215,085	4,302	
옥구읍	3,391	3,388	3		19	3,372		
옥산면	2,548	2,547	1		15	2,533		
회현면	3,201	3,200	1		7	3,194		
임피면	2,931	2,929	2		10	2,921		
서수면	2,810	2,808	2		7	2,803		
대야면	5,554	5,552	2		23	5,531		
개정면	3,357	3,356	1		12	3,345		
성산면	2,969	2,968	1		10	2,959		
나포면	2,411	2,410	1		12	2,399		
옥도면	3,773	3,769	4		21	3,752		
옥서면	4,182	4,172	10		16	4,166		
해신동	2,899	2,894	2	3	13	2,886		
월명동	7,302	7,259	10	33	39	7,263		
삼학동	6,621	6,603	10	8	31	6,590		
신평동	7,222	7,215	4	3	30	7,192		
중앙동	3,820	3,801	3	16	30	3,790		
홍남동	9,303	9,288	11	4	40	9,263		
조촌동	10,848	10,838	9	1	44	10,804		
경암동	7,136	7,130	6		46	7,090		
구암동	5,599	5,592	3	4	11	5,588		
개정동	2,945	2,944		1	14	2,931		
수송동	29,196	29,174	20	2	80	29,116		
나운1동	13,450	13,416	29	5	52	13,398		
나운2동	20,456	20,450	4	2	69	20,387		
나운3동	27,127	27,110	13	4	80	27,047		
소룡동	14,747	14,730	16	1	92	14,655		
미성동	10,174	10,161	12	1	64	10,110		

군산시 공고 제 2012-56호

도로명 변경(원주곡길)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명을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12 ~ 1. 25

군 산 시 장

- 1. 공고기간 : 2012. 1. 12 ~ 1. 25 (14일간)
- 2. 대 상 : 도로명변경 (원주곡길 -> 뜰아름1길)
- 3.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 붙임 참조
- 4. 도로의 길이 : 붙임 참조
- 5. 도로명 및 부여사유 : 붙임 참조
- 6.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12. 1. 12 ~ 1. 25 (14일간)

나. 방 법 : 서면(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다. 서 식

연번	도로명	의견 제출 사유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예시)1	뜰아름1길		홍길동	010-XXX

7. 도로명 변경 절차

가. 공고된 도로명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수렴 → 제출된 의견 군산시 도로명 주소 위원회 상정 → 군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확정 → 도로명 고시

8. 기타

가. 중심선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계 (☎ 450-6083)

- 붙 임 1. 도로명 변경조서 1부(별도열람).
 2. 도로명 변경도면 1부(별도열람). 끝.

군산시 공고 제2012-102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6.

군 산 시 장

1. 공인신조 및 폐기사유 : 회계변경 및 인증기 추가
2.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2. 1. 16.
3.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2. 1. 16.
4.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4점)

연번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사유
1	회계과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소관 군산시수입징수관인		국유재산 기금신설 회계변경
2	회계과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소관 군산시재산관리관인		국유재산 기금신설 회계변경
3	회계과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소관 채권관리관인		국유재산 기금신설 회계변경
4	차량등록 사업소	군산시장의인 차량민원사무전용		차량등록사업소 인증기 추가설치

5. 폐기공인 및 인영(3점)

연번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사유
1	회계과	국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군산시수입징수관인		회계변경
2	회계과	국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군산시재산관리관인		회계변경
3	회계과	국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채권관리관인		회계변경